

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[별표 3의2] <개정 2023. 11. 29.>

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

과 명	분장사무
총무과	서무·인사·관인과 도서의 관수·문서·연금·기획·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만,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의 총무과는 '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'도 관장한다.
관리과	청사의 배정에 관한 사항 청사의 사용, 유지에 관한 사항 후생에 관한 사항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
감사과	관하 전체기관 정기·수시일반사무감사, 기획감사, 복무기강감사, 그 밖에 법원장이 특별히 명한 감사의 계획, 집행 및 그 밖의 사항의 처리 관하 전체기관 법원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요인 분석 관하 전체기관 법원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에 관한 사항
시설과	관내 사법시설 건축, 토목공사의 관리 및 감독 관내 사법시설 전기, 기계 등 설비공사의 관리 및 감독 관내 사법시설 보수 공사의 설계 검토 및 시공 감독 관내 등기소·독신자 숙소의 신·증축 및 기타 사법시설 증축의 설계 검토 관내 사법시설의 사용·유지에 관한 기술적 사항
민사과	민사 및 가사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·심판의 참여·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·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
형사과	형사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·심판의 참여·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·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
행정과	행정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·심판의 참여·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·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

※ 관리과, 감사과, 시설과, 민사과(민사1과 및 민사2과를 포함한다), 형사과 및 행정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법원의 사무국 관리과, 감사과, 시설과의 분장 사무는 총무과에서, 민사과(민사1과 및 민사2과를 포함한다), 행정과 및 형사과의 분장사무는 민형과에서 각 관장한다.